

전부개정 규칙안 신·구 요약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1조(목적)	제1조(목적)	현행 제1조 일부수정
제2조(점용료 징수기간)	제2조(점용허가의 신청)	현행 제3조 일부수정
제3조(점용허가의 신청)	제3조(점용허가 기간)	현행 제6조 일부수정
제4조(경합신청의 처리)	<삭제>	【도로법】 제61조(도로의 점용허가) 제3항, 제4항 【도로법시행령】 제57조(일반경쟁에 부치는 도로점용) 제1항, 제2항
제5조(허가증)	제4조(허가증)	현행 제5조 일부수정
제6조(점용허가 기간)	제5조(점용료 징수기간)	현행 제2조 일부수정
제7조<삭제>	제6조(도로손상에 대한 의무)	현행 제9조 일부수정
제8조<삭제>	제7조(무단점용에 대한 조치)	현행 제10조 일부수정
제9조(도로의 손상)	제8조(대집행)	현행 제11조 일부수정
제10조(무단점용에 대한 조치)	제9조(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)	현행 제13조 일부수정
제10조의2(과태료부과·징수)	<삭제>	【도로법】 제117조(과태료) 제1항~제3항 【도로법시행령】 제10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제10조의3(의견진술)	<삭제>	【질서위반행위규제법】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) 제1항, 제2항
제10조의4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	<삭제>	【질서위반행위규제법】 제20조(이의제기) 제1항~제3항 제21조(법원에의 통보) 제1항~제3항
제10조의5(과태료수납부의 처리·관리)	<삭제>	【서울시 세외수입 시스템】 활용
제10조의6(준용규정)	<삭제>	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 (2014.11.19. 시행)
제11조(대집행)	제9조 이동	
제12조(점용료의 감면)	<삭제>	【도로법】 제68조(점용료 징수의 제한) 제1호~제8호 【도로법시행령】 제73조(점용료의 감면) 제1항~제4항 【도로법시행규칙】 제35조(공공목적 수행하는 법인) 제1호~제7호 제36조(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) 제1호~제3호
제13조(점용료의 분납)	제10조 이동	

※ 별지서식 10개 중 9개 삭제(도로법 시행규칙 근거)
 ※ 현행 18개 조문 → 9개 조문